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24.

화 순 군 수



○ 도로명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유천길 62-7 외 4건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부여 5건)			붙		임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061-379-345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화순군 공고 제2021 - 292호

화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화 순 군 수



1. 개정명칭

○ 규칙명 : 화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는 조건을 완화하고 담배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구수(50호)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 자판기 설치 제한 규정 삭제(제3조1항1호)
 - 화순읍의 경우 가구(주택)가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구 수 50호 이상 충족하는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움.
 - 국민건강증진법에 설치장소가 미성년자 출입금지 장소로 명시되어 있고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1항2호에 규정되어 있음.

- 시설물의 구조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 지정 가능(제3조제3항)
 - 제3조제3항 중, 당초 “동일시설물 내 1개소 만 소매인을 지정한다.”를
⇒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로 변경

4. 붙임

- 화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5. 예고기간 : 2021. 2. 25. ~ 2021. 3. 17.(20일간)

6. 의견 제출

-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순군수(참조 : 일자리정책실장)에게 서면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우)5812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받는사람 : 화순군수 (참조 : 일자리정책실장)
- 전화번호 : 061)379-3162 팩스 : 061)379-3200
- E-mail : thdco78@korea.kr

화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어느 하나”를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00미터를 유지하며, 가구수도 50호 이상 이어야 한다.”를 “100미터 이상일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시설물의”를 “시설물에는”으로, “등과 관계없이”를 “등을 고려하여”로, “1개소 만 소매인을 지정한다”를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영업소는”을 “영업소 간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 기준)</p> <p>①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매인지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는 읍지역은 50미터, 면 지역은 <u>100미터를 유지하며, 가구수도 50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u></p> <p>2. (생략)</p> <p>② (생략)</p> <p>③ <u>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과 관계없이 동일시설물 내 1개소 만 소매인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u></p>	<p>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 기준)</p> <p>① ----- ----- 호----- -----.</p> <p>1. ----- ----- ----- <u>100미터 이</u> <u>상일 것 <단서 삭제></u></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u> --- ----- <u>시설물에는</u> ----- ----- <u>등을 고려</u> <u>하여</u> ----- <u>2개소 이상</u> <u>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u> <u>있다.</u> ----- ----- ----- -----</p>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4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① (생략)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4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영업소 간에는 -----
-----.

<삭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2. 22.

화 순 군 수



1. 공 고 대 상 : 주·정차 금지 위반 대상자 명단 등 : 별첨
2. 공 고 기 한(의견제출기한) : 2021. 2. 22. ~ 2021. 3. 19.(25일)
3. 의 견 제 출 처 :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061-379-3785)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자문서포함), 구두진술(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5. 기타 안내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되므로,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가 감경 됩니다.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 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이 어려운 경우라도 사전 통지서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 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 미성년자

※ 의견 제시 기한 내 자진 납부코자 하는 경우와 기타 의문 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교통안전팀(☎ 061-379-37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 반송이력 1부.

공 시 송 달 공 고 문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를 대장상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화 순 군



1. 공고대상 : 109명(붙임문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1. 2. 24. ~ 2021. 3. 10. (15일간)
3.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문서 참조
5.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문의사항은 행복민원과 공간정보팀(☎061-379-34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공 시 송 달 공 고 문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누락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화 순 군 수



1. 공고대상 : 18명 (붙임문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1. 2. 25. ~ 2021. 3. 11. (15일간)
3.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문서 참조
5. 기타사항 : 기타문의사항은 행복민원과 공간정보팀(☎ 061-379-34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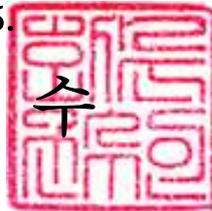
화순군 공고 제2021-3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위반에 따른 우편물(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고지서)을 해당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장기방치, 반송투합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2. 25.

화 순 군 수



1.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오○○(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등 148건(별첨 참조)
3. 공고기간: 2021. 2. 25. ~ 2021. 3. 14.(17일간)
4. 문 의 처: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061-379-3463)
5. 안내사항

가. 현재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하시고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소유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증명서, 폐차증명서 등)를 화순군 재난안전과 차량등록팀(☎061-379-3463, FAX 061-379-38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 등)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규정에 의거 매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화 순 군 청



----- 다 음 -----

1. 매각대상물건 및 공매예정가격
차량 번호 : 15보5455 에쿠스 공매예정가격 : 540,000원
2. 공매공고일정
 - 가. 입찰신청 및 공매보증금 납부기간: 2021년 3월 12일 - 2021년 3월 21일 24시
※ 입찰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의 기한일의 시간까지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나. 입찰참여(입찰가 등록)마감일시: 2021년 3월 12일 - 2021년 3월 21일 24시
 - 다.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2021년 3월 22일 14시 이후
오토마트 홈페이지 인터넷공매 해당 기관의 [결과조회]에 게시
 - 라. 배분요구 중기일 : 2021. 3. 11.
※ 유찰시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 공고합니다(다음 회차 입찰공고와 동시 가능)
※ 오토마트 전산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 적용
4.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www.automart.co.kr) 입찰방법은 입찰 신청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를 통해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입찰가를 등록 하여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 나. 마감기간 안에 입찰신청을 하여야 하며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아래 계좌에 공매 보증금을 10/100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내 **입금하지 않을 경우 또는 타인 명의 입금 시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668-01-005470, 예금주 : 화순군청**
 - 다. 입금은 공매보증금의 합계금액으로 입금합니다.(입찰금액을 한번 제출한 이후에는 금액의 변경, 취소, 삭제가 불가합니다)

라. 공매보증금 반환

매각발표후 유찰자의 공매보증금과 입찰후 개찰일시 이전에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입금된 입찰자의 공매보증금은 입찰서를 제출시 등록된 환불계좌로 개찰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자없이 환불(계좌이체)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매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된 자의 공매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반환되지 않음)

5.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매각예정가격이 공매최저가격임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단, 체납자 등 지방세징수법 제77조 및 제87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나.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 단독입찰 가능

라. 공매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할 경우 최고가 입찰자에 상관없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7.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최고기한 10일)

가.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8.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첨부된 [물건정보]와 같습니다.(차량조회 내용참조)

9.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인도절차 등

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 후 우리 군으로 잔금 납부를 통보해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 및 매각대금을 완납한 낙찰자에 한하여 우리 군에서 해당 자동차등록 기관으로 권리이전등록을 촉탁하오니 낙찰자께서는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권리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나.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보관소에서 인도되며**(관계서류 지참),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의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차량)에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서류상에 번호판이 없음을 표기합니다. 단, 그러하더라도 등록관서(차량등록사무소)에서 분실신고서를 요청한다면 낙찰자는 공매물건(차량)을 먼저 이전한 후 경찰청에 분실신고서를 한 후 분실신고서를 등록관서에 제출하여 번호판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마.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만일, 이전등록 및 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
하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공매의 취소, 중지 및 매각결정취소

- 가. 매각진행 중 계약체결 전까지 채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와 관계된 채납액을
완납하거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고액 입찰자에게 매각
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나. 특정 사유로 인한 이의신청 등이 있거나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하고, 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11.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규격,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공부확인 및 현지답사,
보관소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훼손,도난,기능상 이상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 등록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각 물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주의사항

-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등록
면허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매물건의 하자, 외관상태 및 주행거리 표기 등에 대하여 화순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압류차량 보관소를 입찰자가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인터넷 입찰마감
1영업일전까지 우리 군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매각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하며,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마. 본 공고문상의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국세징수법, 지방세법등 관련법에 의합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징수팀 (☎061-379-3392) 및 오토마트(☎02-6299-547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